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10월 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퇴직연금글로벌볼에셋증권자투자신탁H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4.06.13

3. 정정 사유 :

- 모투자신탁(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) 추가
- 환매주기 단축(5(6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10(11)영업일에 지급 → 4(5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(9)영업일에 지급)

4. 정정요구· 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공통	-	모투자신탁 추가 - 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요약정보		
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환매방법	-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10영업일(D+9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-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	-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8영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 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-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6영업일(D+5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11영업일(D+10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	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9영업일(D+8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추 가)	- 2026.10.08. : 모투자신탁(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) 추가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다. 모자형 구조 -	다. 모자형 구조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	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	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1) 기본운용전략 2) 투자신탁 내 자산배분 범위 ① 주식형 모투자신탁 (글로벌주식모투자신탁): 40% 이하 ② 채권형 모투자신탁 (글로벌채권모투자신탁): 100% 이하	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1) 기본운용전략 2) 투자신탁 내 자산배분 범위 ① 글로벌 주식 관련 모투자신탁 : 40% 이하 ② 글로벌 채권 관련 모투자신탁 : 100% 이하 업데이트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D+4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(D+9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(D+5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(D+10) 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(D+7)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D+4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(D+8) 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그림 업데이트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9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	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